

●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-68호

「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2월 29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「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행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,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‘사업자등록증’에서 ‘사업자등록증명’으로 변경하고,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7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개정안	제명 및 조문	세부 내용
안 제1조	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, 별지 제23호 서식	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신청, 공공디자인전문회의 신고 등 처리 시 신청·신고를 받은 지자체 장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‘사업자등록증’에서 ‘사업자등록증명’으로 변경하고,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
안 제2조	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, 제5조제3항,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	
안 제3조	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	
안 제4조	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, 별지 제3호 서식	
안 제5조	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 서식	
안 제6조	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, 제15조의2제6항, 제16조제2항, 별지 제1호의2 서식, 별지 제19호의4 서식, 제19호의5 서식, 별지 제20호서식, 별지 제21호서식	
안 제7조	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, 제7조제2항, 별지 제3호 서식	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규제개혁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
- 전자우편: hjk8812@korea.kr
- 팩스: 044-203-3456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) 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(전화 044-203-2258, 팩스 044-203-34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